- 신청가능한 민원사무목록
 - 민원사무명
 - 업무분류
 - 민원분류
 - 。 체류
 - 재입국허가(복수)
 - ▼ 재입국허가(복수)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대상: 아래 ⓐ~ⓓ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 가능⑥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단, 아래 ⑥, ⑥,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⑥ 영주(F-5) 자격자: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자: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⑥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 대상: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 신청 : 출입국기관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
- 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A계열 자격(A-1, A-2, A-3)은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수수료 : 5만원* 수수

료 면제 대상◎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 전자민원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 인을 받은 후 취업활동을 개시하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 처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화면입니다.

방문예약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하기 위해 방문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개시일 전 에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비서류	• 방문신청 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은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불러오기로 제출 • 체류지 입증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전자민원 수수료	99,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③ 수수료결제 -> ④ 접수 및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 및 처리	• 접수시간 •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단, 서류 보완, 사범처리 시 7일 이 상소요될 수 있음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 변경,추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근무처 변경,추가)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 신청은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부터 신청 가능 신청자격은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해당외국인, 변경된 사업 장의 아이디로 신청가능
주의사항	• 고용센터로부터 근무처변경 신청에 필요한 고용허가서와 표준 근로계약서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약서 상 근로개시 일 다음날(익일)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여 출입국관 리법위반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처리하시기 바람

■ 체류기간연장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신청시 주의 사항: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4)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1)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제외: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4),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 메뉴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전자민원 수수료	 50,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 ③ 수수료결제 -> ④ 접수 및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
접수 및 처리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방문예약: 연중무휴 처리시간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내지 제37조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경우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방문예약은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만료일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주의사항	방문동거(F-1, 17미만)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
	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민원으로 신청시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1일전 (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체류기간이 1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 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최근 1년간 국내에 6개월 이하 체류자는 면제)

	• 추가서류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 제외): 기본증명 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 적된 경우) ☞ 유의사항 - 출입국·외국인관서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수수료	 50,000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접수시간 •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 전자민원: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 방문처리시: 동 민원은 통상 14일정도의 처리시간이 소요되나, 사무소 방문민원의 수에 따라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법제10조 재외동포법시행령 시행령제16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내지 제37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 출입국 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며,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가능합니다.(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 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주의사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해당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연장신청 불가)**17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동 민원은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다만, 기계판독식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이 아닌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전자민원 수수료

- 50,000원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방문예약

-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접수시간

•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전자민원: 3일이내(72시간)

。 방문처리시: 관할사무소 처리시간에 따름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소관부처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전화번호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기타전자민원 및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 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허가

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 장허가

유학생(D21,D22,D23,D24,D25,D26,D27,D28) 및 어학연수생(D41)
 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으로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체

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구비서류	• 공통서류(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해당학생 학적 정보가 사전입력된 경우 제출 면제) •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 추가서류 • 재정입증서류(대상자에 한함)
수수료	 50,000원(수수료는 전자결제로 납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 : 정부 등 초청장학생 수수료 면제(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자)
처리과정	① 온라인 신청서작성 -> ② 수수료 전자결제 -> ③ 담당자접수 및 처리 ④ 처리결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보완요청 시 재신청)
접수 및 처리	 접수시간: 평일 07:00부터 22:00까지 신청가능(토, 일, 공휴일제외) 처리기간: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31조 및 제94조의3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해당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연장신청 불가)

■ 고용변동신고

- (H2, E9)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 통합신고 : 전자 민원 only
- ▼ (H2, E9 제외)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

(H2, E9 제외)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

-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산업연수업체의 장이 아래 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동 민원은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1. 고용/연수외국인이 소재불명되었을 때(무단이탈)
- 2. 고용/연수외국인이 해고 또는 중도 퇴직된 때
- 3. 고용/연수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 4.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
 - 。 고용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 지가 변경된 때.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학교의 장 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
 -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 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 동일한 사업체라고 함은 법인 또는 개 인 사업자로써 업무의 동질성,회계/노무관리의 통합운영 등이 확인 되는 경우를 말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 또는 파견사업장을 변경한 때
- 5. 고용/연수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6. 전자민원으로 신고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 처리가 불가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고용/연수외국인이 소재불명되었을 때(무단이탈) : 고용연수외 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고용/연수외국인이 해고 또는 퇴직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 사유발생신고서

	 고용/연수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 고용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계약서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동일 사업체 입증서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 또는 파견사업장을 변경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입증서류 고용/연수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기타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사유를 입증하는 제출서류 사본 첨부 → ③ 접수 → ④ 처리 → ⑤ 처리결과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 원신청현황)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 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및 처리기간	• 접수시간 • 평일 07:00부터 22:00까지(토, 일, 공휴일제외) • 처리시간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 • 단, 고용/연수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의 경우 해당외국인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 및 공시송달을 위하여 최소 14일의 기간이 소요 (통상 3주)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방문 예약은 위 사유발생일 15일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 근로·취업개시

▼ 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사실을 통합신고(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통합신고란 하이코리아 상 신고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처리가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해당사유별 입증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 중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전자민원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접수시간(처리시 간)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처리시간 전자민원: 3일 이내
처리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고용지원센터

소관부처	법무부 체류관리과/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4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 타	전자민원은 위 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

■ 자격변경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 자격변경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신청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통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허가 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때에는 '해외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경우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아래 면제대상자는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 60세이상, 13세이하 동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와 그 가족- 특별공로(공익증진) 동포☞ 유의사항 - 출입국외국인관서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

	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 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11만 4천원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전자민원 신청 -> ② 수수료 결제 -> ③ 관할출입 국·외국인관서 심사 처리 -> ④ 신청결과 조회 -> ⑤ 허가서 출력 -> ⑥ 외국인 등록록증 재발급 신청 방문예약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 자격변경은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내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동 민원은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출장소에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국내에서 형사처벌을받은 자는 전자민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를방문하여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형사처벌에 대한 사범심사를 받은 자 제외)

▼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변경허가 : **방문 예약 only**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12만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처리시 간)	1.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2. 처리시간 : 통 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5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방문하고자하는 날의 1일전까 지 가능(허가 전에는 해당 체류자격외 활동 불가)

■ 자격부여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 방문 예약 only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 자 등 아래 대상자가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2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 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가진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중인자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부모의 체류기간) 체류자격 부여
- 국민처우를 받은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후 유학(D-2) 체류자격 부여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8만원 (단, 결혼이민 (F-6)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4만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시간: 미정(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부여 : 방문 예약 only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부여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한미군제대자 또는 국민의 대한민국 국적상실 자 등 아래 대상자가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2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영주(F-5)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 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가진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체류중인자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부모의 체류기간) 체류자격 부여
 - 국민처우를 받은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후 유학(D-2) 체류자격 부여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여기를 클릭해 주세요</u>
수수료	 8만원 (단, 결혼이민 (F-6)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4만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 는 민원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시간: 미정(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 ▼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등록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
	• 출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접수 → ③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 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처리시간 전자민원: 3일이내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단기체류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 자 하나, 항공편이 없어 즉시 출국이불가능한 등의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 자 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신 청하는 민원입니다.* 단기체류외국인: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체류자격에해당하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등 불허처분을 받아서 출국기한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민원실에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2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이 2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방문예약없이 방문하여야 하나, 당일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전자민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종합안 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 출국 예약항공권 또는 사유서
------	----------------------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전자민원 ■ 신청 → 접수 → 처리 ■ 처리결과는 하이코리아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
접수시간	접수시간 •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까지(토, 일, 공휴일제외) 처리시간 • 전자민원 : 4일 이내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참고사항	• 전자민원 : 체류기간 만료일 2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 청가능

■ 시간제취업

-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 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 출입국/체 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 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학적정보 사전입력

	시 면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수수료	면제
처리과정	①신청 \rightarrow ②접수 \rightarrow ③처리 \rightarrow ④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 현황)
처리기간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5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 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 출입국/체 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전자민원 신청 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수수료	면제
처리과정	①신청→②접수→③처리→④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전 자민원신청 현황)

처리기간	14일 이내(통상 3일이내 처리)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5조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체류지/거소이전

▼ 체류지 변경신고/거소 이전신고

재외동포 거소 이전신고

- 재외동포(F-4)가 거소를 변경할 때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F-4)가 거소신고한 국내거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단독세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등록외국인과 거소외국인의 가족세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전세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거소신고증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① 신청 → ② 신청서 작성 → ③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서 접수 및 처리(3일 이내) → ④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접수시간(처리시 간)	접수시간: 평일 07:00부터 22:00까지(토, 일, 공휴일제외)처리시간: 3일 이내(공휴일제외)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민정보과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법제6조제2항, 영제11조, 시행규칙제6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 타	• 거소이전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바랍니다.

■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외국인등록 신청 : **방문 예약 only**

외국인등록 신청

- 아래 체류자격의 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 (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 수행자(A-3) 및 그 가족,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월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중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자는 등록이 면제되므로 외국인등록 방문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등록대상외국인중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 인으로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또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 취득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

류자격변경허가 시 외국인등록이 이루어지므로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 자격변경허가를 위한 방문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여권, 천연색 사진(3.5cm × 4.5cm) 1매 •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3만원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 기업투자(D-8)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처리시간: 외국인등록증 수령시까지 2~3주 정도의 처리시간이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내지 제37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0조 내지 46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45조 내지 제49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예약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 : **방문 예약 only**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

방문예약재외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을 예약하 는 민원입니다. 단, 재외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90일 경과시 처벌 후 거소신고)

구비서류	• 재외동포 여권 표준규격사진(3.5cm × 4.5cm) 1매 거소신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시민권증서(외국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내 발급된 것)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신고증명, 호적상 이름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관공서나 주한자국대사관의 확인공증서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증명서)
수수료	3만원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사전예약 → ②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 신청>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처리시 간)	 접수시간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시간 접수일로부터 2~3주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예약은 방문예정 1일전까지 가능

■ 자격외활동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방문 예약 only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12만원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 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처리시 간)	1.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2. 처리시간 : 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5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방문하고자하는 날의 1일전까 지 가능(허가 전에는 해당 체류자격외 활동 불가)

■ 등록증재발급

▼ 등록증재발급 : **방문 예약 only**

등록증재발급

- 등록외국인이 아래 해당 사유 발생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를 한 때

- 。 5. 동반으로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된 때
- 위 1,2,3,4 항목은 사유발생 즉시, 5항목의 사유 발생시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표준규격 사진(3.5cm × 4.5cm) 1매외국인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수수료	3만원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 기업투자(D-8)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 는 민원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시간: 통상 2~3주 소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35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1조 내지 42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47조 내지 제48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예약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전까지 가능 (단, 동반으로 등재된 자는 만 17세가 된 때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등록사항변경

▼ 등록사항변경신고(여권변경)

여권 변경신고등록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하는 등 사유로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1.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서, 등록외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 여권 정보 중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관서 방문-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등록증-여권 • 전자민원 신청-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관서 방문- ① 방문예약 신청 → ② 예약일시에 관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및 처리*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24시간 신청 가능 전자민원 신청- ① 신청 → ② 접수 및 처리* "마이페이지"의 "전자민원 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접수시간	● 관서 방문 : 방문예약 일시●전자민원 신청 : 07:00 ~ 22:00 * 토·일·공휴일은 제외
처리기간	관서 방문 시 즉시, 전자민원 신청 시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처리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 거소신고)

。 사증

- 사증발급인정서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방문 예약 only**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방문예약

아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비자를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그 외국인을 초청하려 는 자가 대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의 발급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쿠바) 국민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비서류	당동 비자발급인정서발급신청서(별지21호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 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사전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처리시 간)	접수시간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시간 일반사항 6일, 조사필요사항 1개월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9조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방문예약은 방문예정 1일전까지 가능	
----	---------------------	--

- 。 국적
 - 허가
 - ▼ 귀화허가신청

귀화허가신청

- 방문예약
-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국적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정보마당=> 국적/귀화 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30만원(정부수입인지)
처리과정	방문예약 ① 사전예약 → ②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민 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접수시간 •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접수) 법무부 국적과(처리)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관련법/제도	국적법 제4조내지 7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국적회복허가신청 : 방문 예약 only

국적회복허가신청

- 방문예약
-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 사유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또는 이중국적으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 한 내용은 알기 쉬운 국적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정보마당=>국적/귀화 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20만원(정부수입인지)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사전예약 → ②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민 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접수시간 • 방문예약 : 연중무휴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접수) 법무부 국적과(처리)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관련법/제도	국적법 제9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신고

▼ 국적취득신고 : 방문 예약 only

국적취득신고

• 방문예약

• 여기에서의 국적취득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과 국적재취득을 말합니다. 인지는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로 인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인지된 외국인 중 우리 민법상 미성년, 즉 19세 미만으로서 출생 당시에도 부 또는 모가 한국국민이었던 자는 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적재취득은 한국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적의 포기를 마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국적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정보마당 => 국적/귀화 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2만원(정부수입인지)
처리과정	방문예약 ① 사전예약 → ②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민

	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접수시간 •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접수) 법무부 국적과(처리)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관련법/제도	국적법 제3조, 제11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국적선택신고 : 방문 예약 only

국적선택신고

• 방문예약

• 국적선택제도는 국적법에 규정된 각종의 사유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한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기간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생에 의하여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사람 중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외국인으로 태어났으나 미성년일때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여기에서의 국적선택신고는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국적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국적선택신고서 • 정보마당 => 국적/귀화 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방문예약 ① 사전예약 → ②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민 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접수시간 •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접수) 법무부 국적과(처리)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관련법/제도	국적법 제12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국적상실신고 : **방문 예약 only**

국적상실신고

• 방문예약

•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다거나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이중국적 정리)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생겨,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외국국적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었다면 국적상실신고서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있다고 해서 한국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국적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정보마당 => 국적/귀화 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방문예약①사전예약 → ②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신청 → ④접수 →⑤처리*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	• 접수시간 • 방문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접수) 법무부 국적 과(처리)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관련법/제도	국적법 제15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국적보유신고 : **방문 예약 only**

국적보유신고

• 방문예약

• 국적보유신고는 본인이 스스로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혼인이나, 입양, 인지로 인하여 상대방 외국인 의 국내법에 따라 자동으로 그 나라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에 대해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국적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국적보유신고서 • 정보마당 => 국적/귀화 업무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2만원(정부수입인지)
처리과정	방문예약① 사전예약 -> ② 관할 출입국·외국인관 서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민원처 리결과는 "민원신청>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접수시간(처리시 간)	• 접수시간 • 방문예약 : 24시간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가능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접수) 법무부 국적과(처리)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관련법/제도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기타

- 체류지 신고
 - ▼ 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C3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체류지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단기방문(C-3, 단수) 자격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은 제외)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 는 출국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마친 후 `체류지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단기방문(C-3, 복수) 사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체류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단기방문(C-3, 복수)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기방문(C-3, 복수) 사증으로 입국한 후에도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족단위로 입국한 경우에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이나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등과 임차 인이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 제출 모텔 등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숙박비 납부 영수증과 숙 박시설 관리자가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 제출
전자민원 수수료	• 없음
처리과정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처리
접수시간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처리시간 전자민원: 즉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36조, 영 제45조
전화번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기타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방문예약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정이신가요? 온라인 방문 예약을 신청해주세요.

Q. 방문예약이란?

A. 민원인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Q. 꼭 방문예약을 해야 하나요?

A.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과서에서는 방문예약제를 시행 중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 관서를 방문할 경우 민원 접수가 불가합니다. 단,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및 여권 변경 신고의 경우 별도 예약 없이 방문·처리 가능

Q. 방문예약제의 도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A. 방문예약제는 민원처리를 위해 새벽 시간대부터 민원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현관 앞부터 줄을 서고, 대기 번호표 발급 후에도 4시간 이상 장시간 대기하거나 번호표 교부 종료로 재차 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및 민원 혼잡최소화 등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방문예약 시행 이후 민원처리 대기시간은 약 4시간에서 약 10분으로 대폭 단축됨.
- 방문예약 신청 방법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방문예약 신청하기 클릭
 - 。 접수시간: 연중무휴
 - 현재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날부터 신청·접수 가능
 -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혹은 비회원 인증 후 예약신청

방문예약 1

- 민원인의 실명으로만 예약 가능
- 예약가능일자 : 당일 예약신청 가능
 - 방문 당일 예약 가능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약신청자 증가에 따라 예약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여유를 두고 예약 권
 장
- Q.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예약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리인이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예약신청 시에는 신청인(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을 해야합니다. 또한, 한 명의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의 민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각자의 인적사항으로 두 번의 예약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Q. 행정대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A. 행정대행사의 경우에도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 사항으로 예약을 해야합니다. 방문예약을 통해 대행할 의뢰인 수가 두 명 이상이라면, 의뢰인의 수에 맞게 예약을 하신 후 관서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Q. 방문예약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 예약 취소는 방문예정일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예약일정 변경에 따른 취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Q. 방문예약 후 관서 방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출력하여 예약된 시간에 맞춰 관할 관서에 방문하신 후 접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출력방법 : [방문예약 방문예약 신청현황] 화면에서 출력 가능
- 방문예약제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